

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1996 · 3 · 1 의회규칙 제 1호
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의회규칙 제16호
전부개정 2025 · 4 · 7 의회규칙 제4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,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신분증의 규격 등)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(IC)칩을 내장할 수 있다.
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이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5조(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)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

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.

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(신분증의 반납 등) 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부칙 <2025 · 4 · 7 의회규칙 제40호 전부개정>

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1. 규격 및 제식



2.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.

- ① 사진 : 38mm × 40mm
- ② 성명
- ③ 의회명(이천시의회)
- ④ 발급번호
- ⑤ 소속(이천시의회)
- ⑥ 직위/직급(시의원)
- ⑦ 성명
- ⑧ 생년월일

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- ⑨ 발급일
-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(이천시의회회장)
-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
- ⑫ 전화번호

3.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.

4. 한국조폐공사의 신분증 표준안을 준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 분 증 발 급 대 장

결재란	신분증 번호	발 급 년월일	성명	생년 월일	성별	신규,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유	반환	사진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1. 성 명
2. 생 년 월 일(성별)
3. 신 분 증 번 호
4. 재발급신청사유

첨부 : 사진 2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. . .
(서명 또는 인)